

성인학습자 학사 운영 규정

3차 개정 2023. 03. 3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조(편제) 및 제31조의9(경험학습 학점인정)에 의거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미래라이프대학의 성인학습자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 09. 16., 2023. 03. 06)

제2조(수업) 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은 학칙 및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되, 개설 교과목의 경우 이 규정을 따른다.

② 수업은 주중 주·야간 또는 주말(토요일)에 운영한다. 다만, 총장이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절제 수업, 시간제 수업 또는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.

③ 전공과목 중 일부는 e-러닝 또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e-러닝, 블렌디드 러닝 교과목은 학과의 교과과정표에 따라 전공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④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 및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 (개정 2023. 03. 06.)

⑤ 상위학년의 전공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장의 승인하에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 2023. 03. 06.)

⑥ 학내에서 개설된 e-러닝 강의는 학기당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, 취득 성적은 해당학기 평균평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. (신설 2023. 03. 06.)

제3조(출석) ① 대면강의와 동시에 실시간 화상강의로 송출한 콘텐츠 또는 이를 녹화한 콘텐츠를 기간 내에 이수한 경우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3. 03. 06.)

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3. 03. 06.)

1.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: 해당기간
2.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: 해당기간
3. 기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한 직장 내 위급상황인 경우 : 1일(학기당 1회 한정)
4. 그 외 공결은 수업관리규정 제15조의2(공결처리)에 의거 결석하는 경우 해당기간동안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.
5.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에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라이프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미래라이프대학장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(신설 2023. 03. 06.)

[제목개정 2023. 03. 06.]

제4조(휴학) 학칙 제23조를 따르되, 질병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학 중 휴학기간이 총 4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과 미래라이프대학장을 경유하여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23. 03. 06.)

제5조(학기구분)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 2학기로 나눈다.

② 이와 별도로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따로 둘 수 있으며, 교육상 필요에 따라 1년 2학기제 + 계절학기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경험학습 인정제) ① 경험학습 인정제는 학생이 신청하고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23. 03. 06.)

② 본교 입학 이전 국내·외 타 학교·연구기관·산업체에서 학습·연구·실습 등이 전공과 관련될 경우 경험학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2. 09. 16., 2023. 03. 06.)

③ 경험학습 인정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. (개정 2023. 03. 06.)

④ 경험학습 인정을 위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 (개정 2023. 03. 06.)

제7조(졸업요건) 학칙 제 35조에 의하며,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8학기 이상 등록한자, 다만, 조기 졸업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(개정 2023. 03. 06.)
2. 130학점 이상 취득자
3. 삭제 (2023. 03. 06.)
4. 삭제 (2023. 03. 06.)

제8조(장학금) ① 장학금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.

②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한 성인학습자의 국가 지원 및 지자체를 통한 **장학금**(이하 "LiFE 장학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중복지원 인정범위는 장학금 지급 규정에 준한다. (개정 2023. 03. 06., 2023. 03. 31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시행세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LiFE 장학금을 수강학점 기준 3학점 이하일 때 6분의 1, 4-6학점일 때에는 3분의 1, 7-9학점일 때에는 2분의 1, 10-16학점일 때에는 5분의 3, 17학점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한다. (신설 2023. 03. 31)

제9조(K-MOOC 강좌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) ① 본교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총장이 승인하여 이수한 K-MOOC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, K-MOOC 강좌의 수강신청 및 교과구분,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K-MOOC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미래라이프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수강신청하며, 교학지원팀에서는 본교 장비구니 신청기간 이전에 수강신청(학점인정) 명단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K-MOOC 신청학점은 본교 정규학기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 2023. 03. 06.)
2. 이수한 교과목은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.
3.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중복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.
4. 학기당 최대 3학점,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을 인정한다.
 - 가. 학습인정 시간이 650분(13주×50분) 이상 1,300분 미만인 경우 : 1학점 (개정 2023. 03. 06.)
 - 나. 학습인정 시간이 1,300분 이상 1,950분 미만인 경우 : 2학점 (개정 2023. 03. 06.)
 - 다. 학습인정 시간이 1,950분 이상인 경우 : 3학점
5.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에 한한다.
6. K-MOOC 강좌의 학점은 P(Pass)로 평가하고, 신청한 학점은 신청한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한다.

② 정부 출연기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 중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에 적합하다고 승인한 과정에 한하여 제1항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[본조 신설 2022. 09. 16.]

부 칙(기획예산팀-275, 2021. 04. 29.)

이 규정은 2021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기획예산팀-5301, 2022. 09. 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평생교육융합대학의 재학생으로 동 규정 개정 시행 전 2022학년도 2학기에 K-MOOC 강좌를 이수한 학생의 학점은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2022학년도 2학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부 칙(기획예산팀-554, 2023. 03. 06.)

이 규정은 2023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기획예산팀-714, 2023. 03. 31.)

이 규정은 2023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